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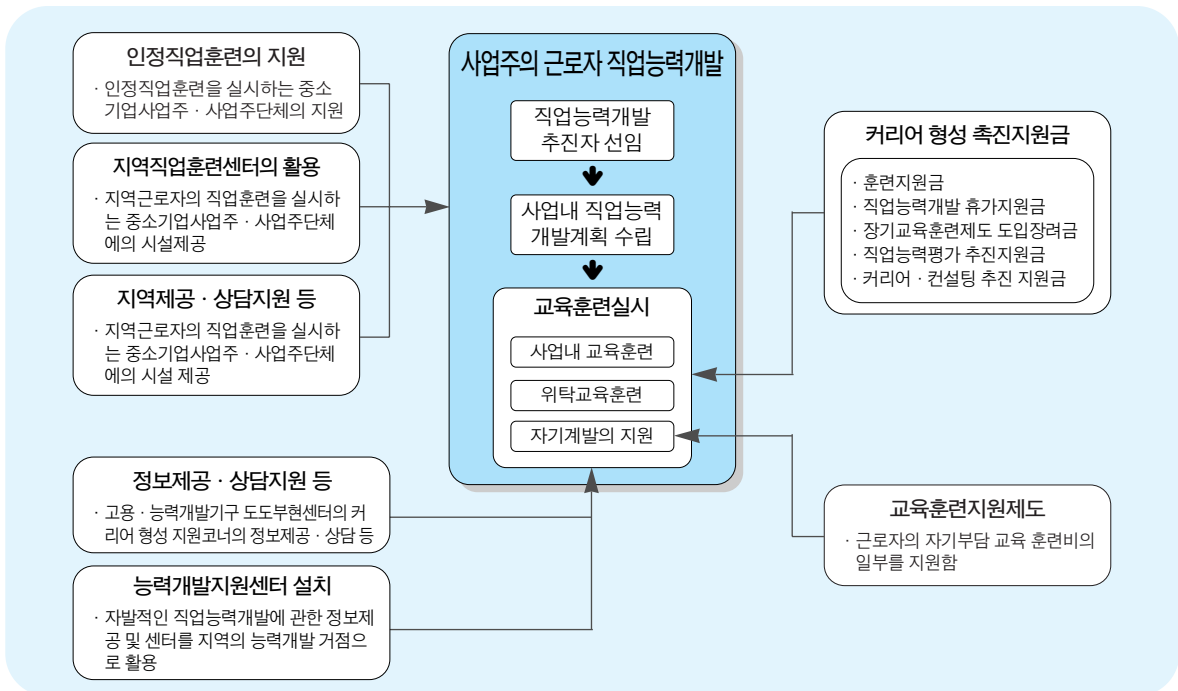
일본 재직근로자의 커리어형성촉진지원



이 의 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eklee@naver.com

1. 일본의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일본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고, 둘째는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지원이고, 셋째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이용이고, 넷째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이다. 그 중 여기에서는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한 재직 근로자의 커리



(그림 1) 사업주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지원



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 신설된 직업능력개발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의 의의

가.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란?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는 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즉, 직업능력개발촉진자에 의한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직업훈련의 실시, 직업능력개발휴가의 부여,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의 도입, 직업능력평가의 실시 또는 커리어 컨설팅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0월에 창설된 제도이다.

나.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의 목적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

12조에 규정하는 직업능력개발촉진자를 선임하고, 동시에 동 법 제11조에 규정하는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 또는 해당계획에 의거한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한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휴가,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의 도입, 직업능력의 평가, 근로자에 대한 커리어 컨설팅의 기회 확보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생활설계를 전기간을 통해 단계적이며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추진하고, 기업내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의 유형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는 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도입 장려금, 직업능력평가추진지원금 및 커리어 컨설팅추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훈련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의 특례로 중소기업고용창출능력개발지원금과 지역인재고도화능력개발지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002년도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의 예산은 72.5

〈표1〉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의 유형

지원종류	개요
훈련지원금	- 피고용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및 기능 습득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 경우, 그 경비와 직업훈련기간 중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직업능력개발휴가 지원금	- 피고용자의 신청으로 교육훈련, 직업능력평가, 커리어 컨설팅을 받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휴가를 받을 경우 그 경비, 직업능력개발휴가 기간중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 도입장려금	- 노동계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신규로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휴가제도에 의해 장기교육훈련휴가의 취득자가 발생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
직업능력평가추진지원금	-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과 관련하여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평가를 받을 경우 직업능력평가 수험에 필요한 경비, 직업능력평가 기간중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
커리어컨설팅 추진지원금	- 피고용자에 대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커리어 컨설팅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

억엔으로 101만명에게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훈련지원금이 가장 많은 31.3억엔(43.2%)의 732천명(72.5%),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이 4.3억엔의 23천명,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도입 장려금이 1.1억엔의 300명, 직업능력평가추진지원금이 4.1억엔의 28천명, 커리어 컨설팅추진지원금이 2.3억엔의 908명이고, 특례지원인 중소기업고용창출능력개발지원금은 17.7억엔의 101천명과 지역인재고도화능력개발지원금은 12.8억엔의 125천명으로 구성되어 교육훈련과 중소기업의 능력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직업능력개발추진자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2조에 의거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근로자의 직업생활설계에 입각한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관한 상담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3. 직업능력개발계획과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

가.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

〈표2〉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의 사항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재사항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재사항 1.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이념 · 경영방침 • 인재육성(종업원의 커리어형성지원)의 기본방침 · 목표 2. 종업원의 커리어 형성에 입각한 배치, 그 외 고용관리에 관한 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배치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방침 • 종업원의 커리어 형성에 입각한 배치 등 고용관리의 구체적 내용 3. 종업원의 커리어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직무에 필요한 직업능력의 명확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 직무 등에 관한 내용의 명시 • 사업내 직무 등 수행에 필요한 직무능력내용 및 레벨의 명시 4. 노동조합과의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의 협의 5. 종업원의 커리어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전체를 나타내는 체계(단계적 · 직능별 · 과제별등의 체계도)와 각 교육훈련의 도달목표 6. 종업원의 커리어 형성에 적응하는데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업원에 대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사내검정, 기능검정, 비즈니스 · 커리어제도등) 7. 종업원의 커리어 형성을 추진하기 위한 기회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급교육훈련 휴가, 장기교육훈련휴가 등의 휴가제도의 내용 • 교육훈련 등을 받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8. 종업원에 대한 커리어 · 컨설팅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컨설팅의 실시방법(직속상사, 전문가의 활용 등) • 커리어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지원조치 	○ 훈련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의 전체 체계 - 각 교육훈련의 목적 및 내용 - 각 교육기관에서 습득할 수 있는 지식, 그 외 능력의 내용 및 레벨 - 각 교육훈련의 대상자 요건 - 각 교육훈련의 대상자 선정 및 선발방법 - 교육훈련 종료 후 능력향상에 대한 평가방법 ○ 직업능력평가 추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평가제도의 명칭, 개요, 범위 - 평가대상자 요건, 선정방식 ○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 장기교육, 훈련휴가 제도 도입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가를 부여하는 교육훈련의 범위 - 휴가부여 조건, 휴가기간, 대상자선발방법 - 휴가자의 의무보고서 등 - 교육훈련수료자의 능력향상평가방법 - 사업국의 지원내용(입금, 경비부담등) ○ 커리어컨설팅 추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어컨설팅 실시기관명 - 커리어컨설팅 개요(명칭, 목적, 커리큘럼) - 커리어컨설팅 받는 자의 요건 - 커리어컨설팅 선정 및 선발방법 - 사업주의 지원 내용(입금, 경비부담 등)



커리어형성 촉진지원제도는 기업내에서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촉진법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즉, 직업능력개발촉진자에 의한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직업훈련의 실시, 직업능력개발휴가의 부여,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의 도입, 직업능력평가의 실시 또는 커리어 컨설팅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01년 10에 창설된 제도이다.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이란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단계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근로자의 직업생활설계에 입각한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추진자가 작성하는 능력개발계획이다.

이 능력개발계획의 작성방법은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의 기본방향,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에 입각한 인력배치의 기본방향 및 커리어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능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의 지원대상 사업주

커리어형성 촉진지원금의 지급대상 사업주의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 및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피고용자에 주지시키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의 사업주이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추진자를 선임하고 도도부현 직업능력개발협회에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이다. 셋째, 지급신청서 제출일에 대해 노동보험료(노동보험보험료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1969년 법률 제84호)제1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노동보험료)를 과거 2년 이상 체납하지 않은 사업주이다. 넷째,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일의 3년 전까지 고

용보험법 제4장 관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이 없는 사업주이다. 다섯째,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의 지급조건에 해당하고 사전에 도도부현센터의 소장에게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사업주이어야 한다.

다. 커리어형성촉진지원금의 지급제한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제한조항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첫째, 훈련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훈련에 관한 사항에 한함)의 지원은 한 사업소당 연간 연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직업능력평가에 관한 사항에 한함) 및 직업능력평가추진지원금은 1인당 10만 엔을 초과할 수 없다. 셋째, 한 사업소당 지원금은 연간 500만엔을 한도로 한다. 단, 중소기업주가 실시하는 인정훈련이 위탁훈련일 경우 훈련지원금은 예외로 한다.

라.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

1) 훈련지원금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거 고용하는 근로자(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 한함. 이하 동등)에게 목표가 명확하며,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혹은 기능을

습득시키기 위해 직업훈련, 배치전환 등에 의해 새로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직무훈련, 또는 정년퇴직 후 재취업의 원활화 등을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이러한 직업훈련에 관해 이하 '대상직업훈련'이라고 함)을 받을 것이며 단, 통신제의 직업훈련은 지원되지 않는다.

지급대상이 되는 직업훈련은 1훈련 코스당 실제훈련 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며, 생산라인 또는 취로의 장에서 실시되는 통상의 생산 활동과 구별되는 업무의 수행 과정 외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훈련은 제외한다.

첫째 OJT로 이루어지는 훈련

둘째 직업훈련지도원 면허를 갖고 있는 자, 그 외 해당 교육훈련의 과목, 직종 등 내용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갖춘 지도원, 강사에 의해 실시되지 않는 훈련

셋째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방

법으로 실시되는 훈련

넷째 기타 근로자의 커리어형성의 효과적인 촉진에 이바지하지 않는 훈련

2)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의 지원요건은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거 근로자의 신청으로 교육훈련, 직업능력평가 또는 커리어컨설팅(커리어컨설팅추진지원대상이 되는 커리어컨설팅에 한함)을 받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 커리어컨설팅이란 근로자가 그 적성이라든가 직업경험 등에 따라 스스로 직업생활설계에 따라 그에 맞는 직업선택이라든가 직업훈련 수강 등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실시되는 상담을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휴가란 교육훈련, 해당 사업주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평가(직업에 필요한 기능 및 그에 관한 지식 검정) 또는 커리어컨설팅을 받기 위해 근로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표 3〉 훈련지원금의 지원요건

구분	지원대상	대상 경비	지원금액(①+②)
사업내훈련	- 교육훈련수강자는 2명이상이고, 피고용자의 1/2이상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① 대상직업훈련코스의 필요 운영경비(직업훈련교·강사의 사례금·수당, 시설·설비 임대료, 교과서 및 교재비) ② 대상직업훈련수강기간중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임금	① 대상직업훈련비용의 1/4(중소기업은 1/3)로 1코스 1사람당 5만엔을 한도 ② 소정노동시간내에 대상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중 해당사업소 평균임금일액에 별도로 정한 비율(0.8)을 곱한 금액의 1/4(중소기업은 1/3)
위탁훈련	① 공공직업능력개발 및 인정훈련시설 ②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③ 학교교육법의 대학교	① 대상직업훈련의 입학금 및 수강료 ② 대상직업훈련 수강기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임금	① 대상직업훈련의 입학금 및 수강료의 1/4(중소기업은 1/3)로 1코스 1사람당 5만엔을 한도 ② 사업내 실시 지급액 ②와 동일.
중소기업의 위탁훈련	④ 전수학교 등 각종학교 및 동등수준의 교육훈련 기관 ⑤ 기타 직업에 관한 지식, 기능 및 기술을 습득·향상 목적의 교육훈련 기관	①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대상 직업훈련을 수강시키기 위해 필요한 입학금 및 수강료 ② 대상직업훈련수강기간 중(1일 수강시간 6시간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임금	① 대상직업훈련의 입학금 및 수강료의 1/3이고, 1코스 1인당 5만엔을 한도 ② 소정노동시간내에 대상직업훈련을 받는 기간중 해당사업소 평균임금일액에 별도로 정한 비율(0.8)을 곱한 금액의 1/3



일본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에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첫째는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이고, 둘째는 인정직업훈련에 관한 지원이고, 셋째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이용이고, 넷째는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이다.

휴가를 말한다.

또한 지원금을 이용할 경우 직업능력개발휴가에 대한 규정 등이 취업규칙, 노동협약 등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 직업능력개발휴가는 직업능력개발촉진법 제10조3 제2항에 규정하는 유급교육훈련휴가를 포함한다.

3)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도입장려금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거 노동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새롭게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연속1개월 이

상)를 도입하고, 해당 휴가제도에 의해 장기교육훈련 휴가의 취득자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급대상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을 경과한 날까지로 하고 해당일까지 종료한 장기교육훈련휴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기교육훈련 휴가제도도입장려금의 대상 교육 훈련은 교육훈련기간이 장기교육훈련 휴가기간의 1/2 이상이어야 하고, OJT 및 통신제 교육훈련은 제외하고 있다.

〈표4〉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의 지원요건

구분	지원대상	대상 경비	지급금액(①+②)
직업교육훈련	-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의 직업훈련 - 학교교육법상의 고등학교, 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등의 직업훈련 - 인정직업훈련	① 교육훈련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교육훈련경비로 지원한 금액 ② 교육훈련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휴가기간 중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임금	① 입학료, 수강료, 교재비 등 지원금액의 1/4(중소기업주는 1/3) ② 직업능력개발휴가기간(150일 또는 200일을 한도)중 해당사업소의 평균임금일액에 별도로 정한 비율(0.8)을 곱한 금액의 1/4(중소기업주는 1/3)
직업능력평가	-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거 사업주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능력의 평가와 직업능력평가자의 교육훈련	① 직업능력평가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휴가를 부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평가수험 경비로 지원한 금액 ② 직업능력평가를 받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휴가기간 중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임금	① 직업능력평가 수험경비 등 지원금액의 1/4(중소기업주는 1/3) ② 교육훈련지원액의 ②와 동일
커리어컨설팅	- 커리어컨설팅 추진지원금 대상이 되는 커리어컨설팅에 한함	- 커리어컨설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휴가기간 중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임금	① 교육훈련지원액의 ②와 동일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는 훈련지원금,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 도입 장려금, 직업능력평가추진지원금 및 커리어 컨설팅추진지원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훈련지원금 및 직업능력개발휴가 지원금의 특례로 중소기업고용창출능력개발지원금과 지역인재고도화능력개발지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4) 직업능력평가추진지원금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거 피고용자에 대한 직업 능력개발 및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것이며, 해당사업주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직업 능력평가이어야 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직업능력평가에 관한) 및 직업능력평가 추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엔을 한도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직업능력평가는 연간계획에 의거 근로자에 대해 다음 ① 및 ②에 해당하는 직업능력평가를 받게 하고 ③을 충족시키는 사업주이어야 한다.

- ①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이 정한 직업능력평가
 - 직업능력개발촉진법(1969년 법률 제64호) 제44조의 기술검정
 - 기능심사인정규정(1973년 노동성고시 제54호) 제1조 규정에 의거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
 - 공익법인 등이 실시하고 있는 기능심사(직업능력개발국장이 정한 직업능력검정)
- ②해당사업주 이외의 자가 실시하는 ①의 직업능력평가로서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서 규정하는 것

〈표 5〉 장기교육훈련제도 도입 장려금

지원대상	지급원금	비고
장기교육훈련휴가제도 도입	30만엔	장기교육휴가제도에 의한 장기교육훈련휴가의 취득자가 있을 것
장기교육훈련휴가 취득자가 있는 경우	1인당 5만엔으로 장기교육훈련휴가 취득자는 20인을 한도로	수급자격인정일부터 3년 경과한 날까지 교육훈련을 수료한 장기교육훈련휴가를 지급대상.

〈표 6〉 직업능력개발휴가지원금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원대상 경비	지급원금(①+②)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한 직업능력평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직업능력평가를 위한 경비(수험료 등). 단, 직업능력평가에 관련한 수험료 등은 해당 사업주가 직업능력평가기관에 직업능력평가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함 ② 직업능력평가기간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임금	① 직업능력평가 경비의 3/4 ② 직업능력평가 기간중, 해당사업소의 평균임금 일액에 일정율(0.8)을 곱한 금액의 3/4



③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거 직업능력평가를 받는 자에 대해 교육훈련(해당 직업능력평가 대상이 되는 기능 또는 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에 한함)

5) 커리어컨설팅추진지원금

커리어컨설팅이란 근로자가 적성이라든가 직업경험 등에 따라 스스로 직업생활계획을 실시하고, 그에 맞는 직업선택과 직업훈련 수강 등 직업능력개발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실시되는 상담을 말한다.

이는 연간직업능력개발계획에 의해 근로자에 대한 커리어컨설팅에 관련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커리큘럼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커리어컨설팅추진지원의 대상 커리큘럼은 ①과거 직무(경험)의 재고조사에 관한 사항, ②현재 직업의 흥미·가치관·능력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 ③근로자 개인, 기업, 경제사회 등 주변 환경의 명확화에 관한 사항, ④향후 커리어컨설팅의 작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기간은 집단적인 커리어컨설팅은 2일 이상에 12시간 이상이고, 개별적인 커리어컨설팅은 실시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이상 일본의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근로자의 평생학습차원에서 자기주도적인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지원제도 등과 같은 능력개발지원제도의 다양화이다. 즉, 기업에 능력개발추진자를 두어 근로자의 평생능력개발계획의 작성이나 커리어 컨설팅을 통한 근로자 개인의 평생 커리어형성을 촉진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는 노사협력적이고 계획적인 평생직업능력개발계획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사업내 직업능력개발계획의 작성과 그에 의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유급교육훈련휴가나 커리어 컨설팅 등 근로자의 자기주도적인 능력개발에도 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커리어형성촉진지원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능력개발에 대한 상호협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용안정, 사회보장 차원에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환경의 정비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¹⁴⁾

〈표 7〉 커리어·컨설팅추진지원금의 지원요건

지원대상	지급대상	지급원금
전문기관 등에서의 컨설팅에 관련한 연간위탁비용	커리어컨설팅에 관련한 지식 또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업외의 기관 또는 개인(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되는 것	비용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처음 1년간만 지급하고, 25만엔을 한도)